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7,736,711	7,732,101
일반회계	243,336,098	7,300,083
특별회계	14,400,613	432,018
공기업특별회계	6,571,614	197,14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571,614	197,148
기타특별회계	7,828,999	234,87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42,127	1,264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48,388	10,4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6,284	21,18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55,400	40,6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11,400	69,3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65,400	91,96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10,25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